

Part I Child Labour Statistics

2003년에 열린 제 17차 노동통계국제회의(ICLS)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아동노동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사경험을 얘기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위험한 일을 포함한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통계 정의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와 시대에 걸쳐 비교 가능성이 있는 방법론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 결과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는 2008년 말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 18차 회의의 어젠다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통계의 개발은 당국과 국제조직이 아동노동의 본질과 범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과 분석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동노동을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것은 많은 복잡한 개념적인 문제와 정의 및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하며, 18차 노동통계국제회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명확히 할 중요한 기회이다.

배경

아이들이 노동에 종사하는 나라는 아동노동에 대한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 통계 발전에 공헌해야 하며, 일하는 아이들을 고려한 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정책입안자들을 포함한 통계의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일하는 아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정보는 아동노동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여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는데에 적합한 규범들을 만드는데 유용할 것이다.

아동노동통계의 적당한 국가적 시스템은 그 나라의 일하는 아이들에 관한 신뢰성 있는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리적 및 직업분포, 연령과 성별, 다른 관련 특징들을 가능한 범위까지 포함해야 한다. 교육상태와 비 학교 활동에 할당된 시간, 일하는 아이가 속한 가구의 수입과 지출수준, 경제활동에 아이들의 참여와 그것의 영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갖는 통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시스템은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자료일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통계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주요활동(주로 공부, 일, 집안일)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복지 면에서 이러한 행동들의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 경제 사회통계와 조화를 이루어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그 국가내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노동의 정체성과 우선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아동노동에 대해 제기된 통계를 측정하는 표준에 대한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특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아이들이 종사하지 말아야 할 일로서 아동노동에 대한 국가적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 2) 아동노동의 정량화와 특성화를 고취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방식을 따라야 한다.
- 3) 회원국과 ILO가 받아들일 만 한 것이어야 한다.
- 4) 시대와 국가에 걸쳐 아동노동통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아동노동의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은 많은 것이 있다. 그러한 논쟁중의 대부분은 아동노동이 정의되는 기초에서 아이들에 의한 비 학교 활동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한 논쟁이다. 세계적인 아동 노동 추계에 관한 ILO의 접근은 1) 경제활동(일)에 종사하는 아이들의

부분집합과 2) 1)에 의해 포함되지 않는 특정한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있는 것들의 총계로서 아동노동을 받아들인다.

아동노동(child labour)에 대비하여, 일하는 아이들(working children)이라는 용어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아이들에 의한 수행되는 모든 대부분의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시장에서든 아니든, 유급이든 무급이든 단시간이든, 풀타임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리고 그 행동들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아이들이 속한 집에서 수행되는 집안일은 제외하며, 학교생활의 부분인 활동들은 제외한다. 가게 기업에서의 일, 가게기반 생산활동에서의 일은 포함된다. 고용주로서 다른 가구에서 수행되는 일도 포함된다. 고용(즉, 일)으로 카운트되기 위해서 아동은 7일간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적어도 한시간을 일해야 한다.

주의를 요하는 관련 이슈는 성인노동자와 법적 노동연령(일을 하는 최소연령 이상)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의 개념이 '고용인'(employed workers)과 '실업자(unemployed person)'의 전체 그룹을 표시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동력 통계는 법적 연령의 노동력에 대해서 취업과 실업에 관한 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동실업자(unemployed child)의 개념은 정확한 용어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소근로연령 이하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구직을 할수 없고 채용될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어떤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많은 아이들은 일이 제공되면 일을 할수 있고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아동노동통계의 목적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일을 원하는 아이들(children wanting work)'이라는 용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내의 아동 노동의 잠재 인구를 완전히 조망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경제활동(economically active) 아이들은 통계적 정의이다.

아동노동통계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은 ILO의 1973년 Minimum Age Convention과 1999년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에 의해 마련된 현존하는 국제노동표준의 틀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규약들은 아동노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가 내 및 국제적 행동들에 대한 법적규약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노동표준은 또한 아동노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유연성과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고용주와 노동자 측 국제조직의 의견을 들은 후에 국제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20.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에 대한 통계적 개념을 세우는것에 관련이 있다.